

「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4조(특허) ① (생 략)</p> <p>1. 「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</p> <p>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공업단지입주기업체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(특허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「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에 --- ----- -----</p> <p>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에 ----- ---</p> <p>5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“국가첨단전략산업”에 해당하는 경우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첨단산업의 보세건설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대상에 “국가첨단전략산업”을 추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5. 제1호부터 <u>제4호까지</u>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정상 통관절차를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업시설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체</p> <p>제5조(특허의 갱신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운영인은 영 제191조에 따라 특허면적 등 수용능력을 증감하려면 별지 <u>제1-3서식의</u>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증감 신청(승인)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⑤ 운영인은 제4항의 수용능력 증감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수입신고) 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「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<u>고시</u>」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</p>	<p>6. ----- <u>제5호까지</u>에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5조(특허의 갱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제1-3호서식의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⑤ ----- <u>지체 없이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10조(수입신고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전에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</u>」 -----</p>	<p>○ 제5호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</p> <p>○ 조문 내용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1조(분할신고 물품의 처리) 보세건 설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이 분할되어 신고되었을 때에는 품목분류 등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은 「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를 준용한다.</p> <p>제12조(신고수리전 사용제한 및 외국물품의 통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은 「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를 준용한다.</p> <p>제19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분할신고 물품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사항은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-----.</p> <p>제12조(신고수리전 사용제한 및 외국물품의 통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수입통관은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-----.</p> <p>제19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2024년 ----- -----</p> <p>-----.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재검토기한 재설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0조(규제의 재검토) 관세청장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(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0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24-00호, 2024. 1. .></p> <p>이 고시는 2024년 1월 일부부터 시행한다.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